

## EL724. 생분해성수지제품 환경표지인증 신청 안내

생분해성수지를 이용한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제한('22.1월) 규제 이후 일부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한시적 허용(~'28.12.31)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28일

- (신청대상)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개정 고시('24.12월, 예정)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EL724. 생분해성수지제품(1회용품)
  - ※ 가능제품) 비닐식탁보, 식품기구(빨대, 젓는 막대), 봉투류(식품봉투, 쇼핑봉투), 식품용기(용기), 주방잡화(커피필터, 다시백, 장갑 등)
  - 불가제품) 컵, 접시, 수저, 포크, 나이프, 면도기, 칫솔, 우산비닐 등
- (신청기간) 희망 시
  - ('24.12.31.까지 한시적으로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) 인증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자동조정 예정
  - ※ 자동조정 예시) (당초) '23.5.1.~'24.12.31. → (조정) '23.5.1.~'26.4.30.
  - ('24.12.31.이전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) 신규 신청만 가능
- (인증기간) 인증심의 완료 후 3년(연장 시 최대 2028.12.31.까지)
- (신청방법) 에코스퀘어(<https://ecosq.or.kr>)를 통해 관련서류 작성·첨부
- (접수문의) 1577-7360 / (심사문의) 02-2284-1553, 1531, 1534

- (Q1)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(1회용품)은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?
- (A1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고시하고 있는 1회용품 중 1. 용기, 8. 1회용 봉투·쇼핑백, 10. 1회용 비닐식탁보, 11. 1회용 빨대, 젓는 막대가 대상입니다.
  - ※ 1회용 컵, 접시, 수저, 포크, 나이프, 면도기, 칫솔, 응원용품, 우산비닐은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신청 불가
- (Q2) 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- (A2) 접수는 10.29(화)부터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(1577-7360)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- (Q3) 저희는 당초 1회용품 한시적 유예에 따라 인증기간 3년을 받지 못하였고 '24.12.31. 인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?
- (A3) 한시적 유예로 인해 인증기간 3년을 적용받지 못하고 '24.12.31. 인증이 종료될 예정인 기업은 인증시작일(인증서별 상이)로부터 3년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.
  - 대상기업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'25.1.1. 이후부터는 인증기간을 조정하여 반영한 인증서를 에코스퀘어(<https://ecosq.or.kr>)를 통하여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(Q4) 대상기업 안내 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하신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누구인가요?
- (A4) 에코스퀘어(환경표지인증시스템)에 등록된 인증담당자입니다.

- (Q5) 저희는 '24.12.25. 인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?
- (A5)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·적용되는게 원칙입니다. 따라서, 인증기간 3년을 채워 '24.12.31.이전 인증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관련 업무진행이 불가\*하므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  
※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(Q6) 1회용이 아닌 다회용 제품의 경우 제약 없이 인증신청이 가능한가요?
- (A6) 다회용 제품의 인증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인증기준에 따라 합성수지는 생분해성수지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(Q7) 식품용기는 신청대상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기 뚜껑도 적용범위에 해당되나요?
- (A7) 식품용기와 함께 용기 뚜껑을 포함하여 인증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청대상 적용범위에 해당되지만 뚜껑만 별도로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(Q8) 쟁반같이 활용하는 트레이는 인증신청이 가능한가요?
- (A8) 접시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다면 신청대상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용기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다면 신청대상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 
※ 예시) 반찬 또는 음식물 등을 올려놓는 용도의 운두가 낮고 납작한 그릇은 접시, 음식물의 보관 또는 국물 등을 담더라도 이동 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인 경우 용기로 구분